

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제 증명서

- 교육대학원 학칙 -

제16조(수업연한) ① 수업연한은 2년 6개월(5학기)로 한다.

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업연한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다.

1. 학기당 기준학점 초과취득자
2. 교류협정 등 특수한 경우

제17조(수업 및 수업일수) ① 교육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.

②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, 이를 제1학기 및 제2학기로 나눈다.

③ 1학기 개시일은 3월 1일, 2학기 개시일은 9월 1일로 한다. 다만, 1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.

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은 학칙 제 16조 1항 및 제 17조 1항에 의거

5학기제로 운영되고 있는 야간대학원임을 증명함.

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장

